
현안연구 2023-11

2023. 9. 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최 길 수

연구책임

• 최길수 /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현안연구 2023-1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발행인 김영진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37(문자동)
전화: 042-530-3517
홈페이지: www.ds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요 약	1
I . RISE의 의의	3
1. RISE의 개념	3
2. RISE의 주요 특징	4
II. RISE의 추진 동향	7
1. 정부의 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	7
2. 시범지역의 RISE 추진 개요(신청내용 기준)	7
3. RISE 관련 입법 동향 :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	14
III. 지역별 RISE 추진 및 연구 최근 동향	23
1. 부산광역시	23
2. 대구광역시	26
3. 충청북도	29
4. 충청남도	32
5. 전라북도	33
6. 경상북도: 센터운영계획을 중심으로	34
IV. 대전시 RISE 추진체계 구축 방안	37
1. 대전광역시 RISE 추진체계 구상	37
2. 참여주체 및 역할	38
3. 운영근거(자치법규) 제정 방안	46

요약

■ 연구 목적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정부의 지역대학지원 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연구의 주요 내용

- RISE의 의의
 - RISE의 개념
 - RISE의 주요 특징
- RISE의 추진 동향
 - 정부의 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
 - 시범지역의 RISE 추진 개요(신청내용 기준)
 - RISE 관련 입법 동향 :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
- 지역별 RISE 추진 및 연구 최근 동향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 대전시 RISE 추진체계 구축 방안
 - 대전광역시 RISE 추진체계 구상
 - 참여주체 및 역할
 - 운영근거(자치법규) 제정 방안

■ 정책건의

- RISE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타 시도의 사례에서와 같이, 과단위로 최소 3개팀, 최소 15명 규모로 출발할 것을 제안함
- 실질적으로 시의 RISE 정책을 추진할 전담기관으로 설치하여 하는데,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은 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선정하며 충분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선정함
- 대전 RISE센터가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수적임
 - 그 자치법규에는 목적, RISE센터의 설치 및 위탁, 행·재정적 지원, 공무원의 파견,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I. RISE의 의의

1. RISE의 개념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 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를 의미함
- 지역혁신중심 대학운영체계(RISE)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에서 전담하던 대학 재정지원 예산과 기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임

<RISE 비전도>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2. RISE의 주요 특징

- 특히, 재정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주관하던 대학재정지원 예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특징을 가짐
 - 이를 위해 `23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개편하여 약 9.74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됨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RISE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산업체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라는 점이 특징임
 - RISE는 지역 산업과 여건을 고려한 5년 단위 대학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수립하여 재정 지원을 한다는 특징이 있음
 - RISE는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집행하는 특징이 있음
 - RISE는 지자체가 수립한 5개년 RISE 계획을 토대로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 별도의 공모 평가가 없음

<RISE의 특징>



- 「지방대학육성법」 제21조제1항
- ※ 시범지역 운영 이후 전 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육성법」 개정 추진 예정
- 지자체의 주도 하에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재정지원 추진
- 광역지자체(주도),
- 대학, 기초지자체, 기업 등 협력 및 참여

- 사업 총괄(사업기획), 자체 성과평가
 - ※ RISE센터를 통한 예산배분, 집행, 선정, 관리
 - 광역지자체(시·도)
-
- 지역 연계 가능 분야에 대해 지역 산업 및 여건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예)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직업교육, 지역혁신, 취·창업 등
 - 5년 단위 RISE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필요시 협약 변경 가능)
 - RISE계획에 대한 예산 심의
-
- RISE 통합 예산에 대한 지역별 기준액 산정(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연구)
 - 자자체 재원, 타부처 재원 등을 활용한 연계 지원
-
- (국고) RISE 통합 예산
 - (지자체) 자체재원 등
-
- 지자체 산하 비영리 법인이 사업비(국비+지방비) 집행
 - 지자체가 마련한 RISE 계획안에 대해 교육부-지자체 협약 체결: 별도 공모 평가 없음
 - (지방) 지역고등교육협의회(신설추진)

- 구체적으로 RISE 체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조직 구성,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됨
- (조직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관련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되며 지역 주도 대학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는 일명 'RISE 센터'를 비영리법인 형태로 설치해야 함
 - 교육부는 중앙 RISE 센터를 지정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RISE 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음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3.02.01)

- (고등교육 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약을 설치해야 함

- 지역 발전 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음
- 지역 주축 산업 외에도 국가 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관련 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음
- 계획 수립시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지역 대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등교육 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대학 총장, 산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
- 심의 및 조정 사항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산학협력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사항, 지방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정주 여건 조성, 고등교육과 초·중등 교육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임
 - (관련 제도 정비) 지역 대학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 정비 필요함
- 앞서 논의한 대학 전담부서 설치, 지역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규제 완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거나 기신청 지자체의 경우 신청 연장 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함

II. RISE의 추진 동향

1. 정부의 RISE 시범지역 선정 결과

- 정부는 RISE(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 사업에 대해 2023~2024년 시범지역 운영을 거쳐 2025년 전 지역에 도입할 계획임
- 라이즈 시범지역 공모는 2월 2일(목) 공고하여 2월 21일(화)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신청함
-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관계자 9인으로 구성)의 평가결과,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
 -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 선정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운영 예정 기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 인재양성 재단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교육 진흥원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2. 시범지역의 RISE 추진 개요(신청내용 기준)

1) 경상남도

- ① (전담조직) 인재양성담당관(대학협력/대학혁신/산학협력 담당 등)

< 현 행 > 5담당 20명						< 시범기간 > 8담당 23명					
교육담당관						(가칭) 인재양성담당관					
교 육 정 책	교 육 지 원	대 학 협 력	평 생 교 육	마 리 아 체 육 설 T F	대 학 학 식 T F	교 육 정 책	교 육 지 원	평 생 교 육	대 학 협 력	대 학 혁 신	산 학 협 력
5명	3명	4명	4명	2명	2명	4명	3명	3명	3명	3명	3명

※ '25년 인재양성국 신설 추진

② (전담기관)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가칭)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하여 재단 하위 조직으로 RISE센터 신설

③ (주요 특징)

- RISE센터를 구심점으로 고교-전문대학-대학-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정주 선순환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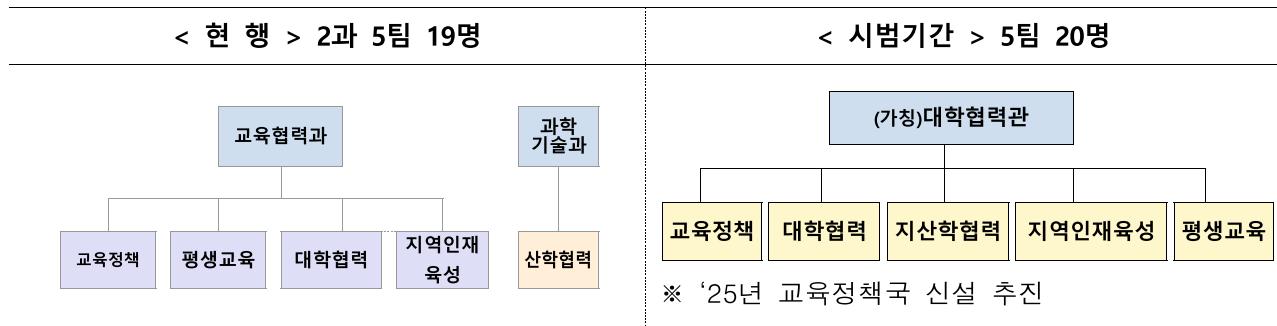


-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주력산업 연구 특성화 대학/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대학/지역정주기반 평생교육체계 구축 제안

- 광역-기초-지역기업-지역대학간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체계 고도화 및 지역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

2) 경상북도

- ① (전담조직) 대학협력관(교육정책팀/대학협력팀/지산학협력팀/지역인재육성팀/평생교육팀)



- ② (전담기관) 시범기간 중, 경북연구원 또는 경북테크노파크 중 지정·운영

→ 2025년 이후 경상북도 RISE센터 법인 별도 설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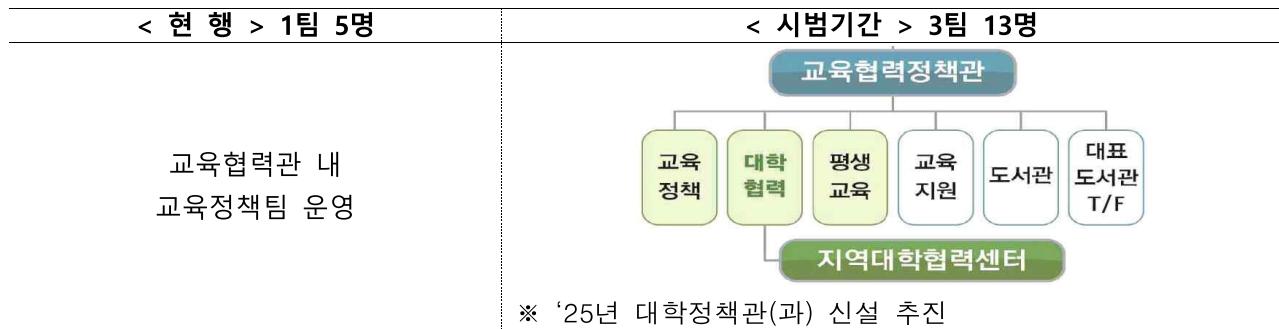
③ (주요 특징)

- 도-시군 협력으로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 투자계획 제시
 - 대학혁신 지역혁신, 산업혁신 분야 10년간 도비 1.5조원 투자 예정
- 전담조직-전담기관-협의체 간 명확한 역할 제시

기관명	주요 역할	비고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고등교육5개년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RISE 거버넌스 관리(협의체, 외부피드백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지역 발전 방향과 특화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핵심분야 과제 ▶ 글로컬대학 육성방안 수립, 중앙부처 사업 RISE연계방안 모색 ▶ 지역 자체-대학-기업 간 연결 협력 증진 및 상생방안 마련 ▶ 교육과정·학사구조 및 제도 개선 	
경상북도 RIS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운영현황 및 통계관리 ▶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혁신활동 및 성과 모니터링 ▶ 교육혁신사업 추진사항 점검 환류체계 구축 ▶ 산업수요기반 R&D지원 및 인재육성 ▶ 대학별 특성화 사업 운영 ▶ 지산학협력 사업추진 ▶ 참여대학 교육체계 분석·진단 및 교육혁신 프로그램 발굴 	
경상북도 고등교육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심의 ▶ 지역 내 산학협력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지원 및 정주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대학과 초·중등학교 간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 유학생 유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 	

3)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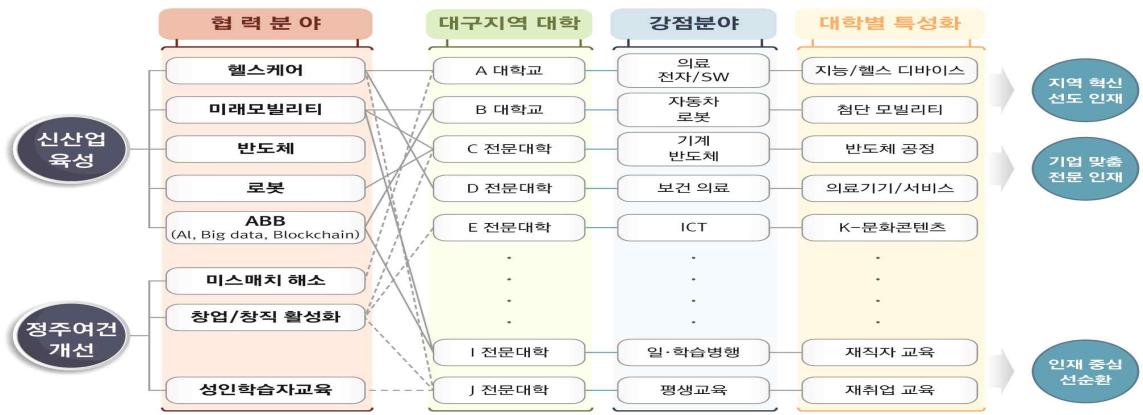
① (전담조직) 교육협력정책관(교육정책팀/대학협력팀/평생교육팀)



② (전담기관) 시범기간 중, 대구정책연구원 지정 → 2025년 이후 대구 RISE센터 법인 별도 설립 추진

③ (주요 특징)

- 지역산업과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를 고려한 매칭을 통해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하여 인재양성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제시



- 자체 지방비,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하여 총 사업비 2,966.5억 원 규모의 대학지원 4개 프로젝트 추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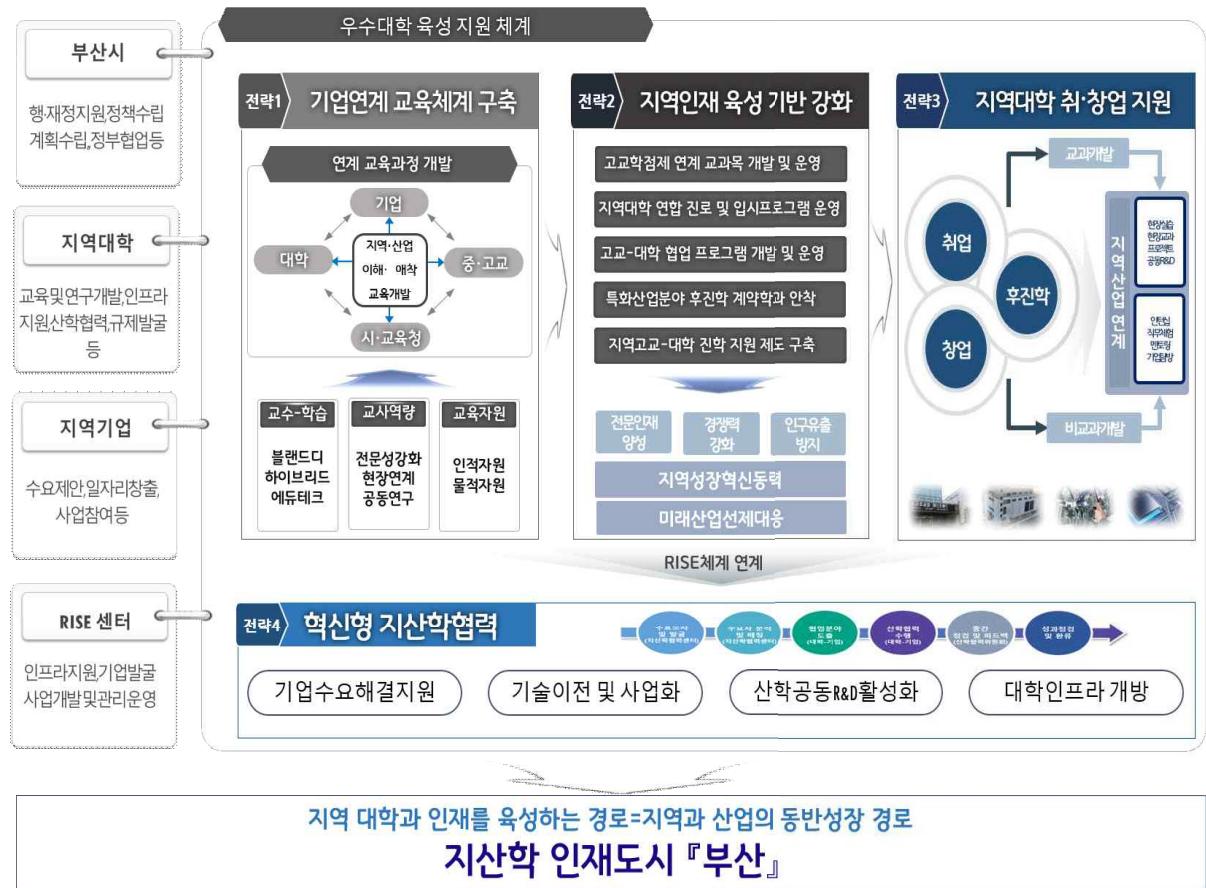
- ❶ 지역 맞춤 파워풀 인재양성 프로젝트(지역기업 인재양성)
- ❷ D-Brain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섬유, 기계 등 전통산업을 5대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지산학연 추진)
- ❸ 현장 밀착 통합 기업지원 프로젝트(기업집적지에 대학이 현장 캠퍼스를 조성하여 기업 밀착 지원)
- ❹ 지역사회 열린대학 프로젝트(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지역사회 개방)

4) 부산광역시

- ① (전담조직) 지산학협력과(산학협력팀/대학협력팀/인재육성팀/혁신도시지원팀/ RISE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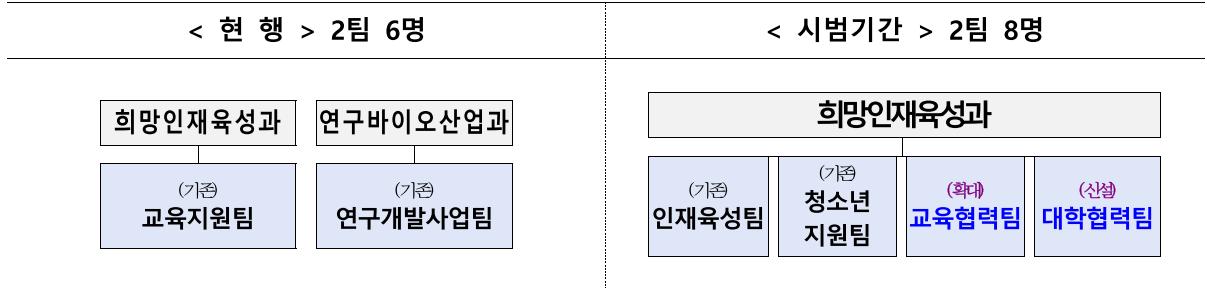


- ② (전담기관) 부산테크노파크 산하 지산학협력센터
- ③ (주요 특징)
 - ‘지산학연협력 혁신도시’를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전국 최초 대학지원 전담부서 신설, 지산학 관련 조례 제정, 지산학협력브랜치(52개소) 운영, 전국 최초 지자체-대학 인사교류 제도 운영 등 운영 기반 충실
 - RISE체계를 통한 부산형 지역대학지원 및 인재양성 체계 제안



5) 전라남도

① (전담조직) 희망인재육성과(교육협력팀/대학협력팀/인재육성팀/청소년지원팀)



② (전담기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확대·개편하여 RISE팀 신설

③ (주요 특징)

-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 제시

① (운영체계)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② (특화인재) 대학특성화 및 구조개혁
③ (지역정착)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마련	④ (교육혁신) 글로컬 인재 양성

-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 혁신적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연관 협력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 추진

-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과 학생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입학, 청년인구 유입,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계획 제시

→ 지자체가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취업할 일자리 창출도 적극 연계 가능

- ‘글로컬 인재 양성’으로 대학의 특성화 분야의 국제교류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적극 유치

→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근로자 확보와 인구늘리기 정책 위해 외국인유학생 적극 유치, 지역 정착 과정 운영

6) 전라북도

① (전담조직) 지산학협력과(대학정책팀/대학혁신팀/대학협력팀/산학협력팀)

구분	현 재	과도기(~`23년 09월)	확립기(~`23년 10월~)
중점 목표	전북 지산학협력 계획 수립 및 대응	전북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북 지산학협력 거버넌스 확립 및 기능 확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 RISE 사업 대응 ■ 대학-지역인재 육성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사업 추진 및 RISE 시범체계 구성/운영 방안 도출 ■ 대학 협력체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산학 협력 거버넌스 ■ 지자체-대학 연계 대학 재정 지원 사업 발굴 및 기획
조직	1팀 3명	1팀 7명	1과 4팀 19명

확립기 조직도



② (전담기관) 시범기간중, 전북테크노파크 산하 JB지산학협력단 신설 → 2025년이후 별도 법인 신설

③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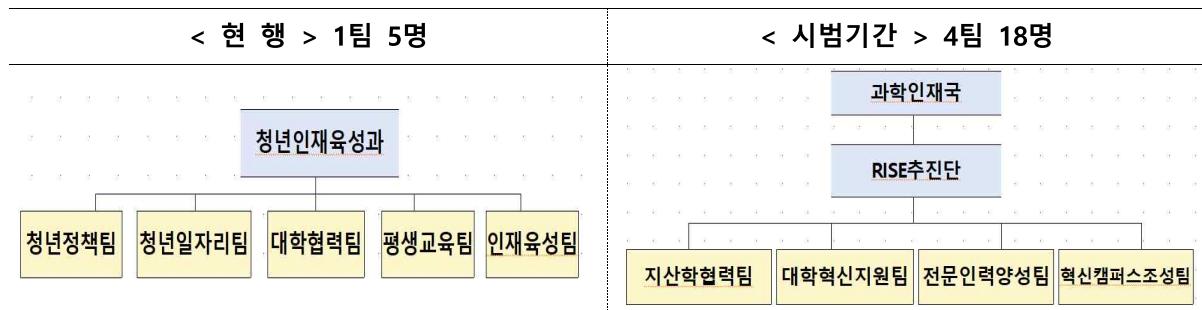
-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12대 대학지원 과제를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는 등 RISE체계 구축을 충실히 준비

① 사업 추진 체계의 조기 정착 ① 전담 추진체계 구축 및 인력 확보·운용 ② RISE 기반의 지자체 대학지원사업 개편 ③ 대학 지원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②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④ RISE 연계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⑤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⑥ 대학과 혁신주체간 상생협의체 운영
③ 전북형 4대 실행모델 차별화 운영 ⑦ 추진모델과 차별화 요소의 최적화 구축 ⑧ 주력산업 육성투자와 연계 시너지 확보 ⑨ 대학-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강화	④ 기획·실행·평가·환류 전주기 관리 ⑩ 실수요·현안 기반의 대학 지원계획 수립 ⑪ P-D-C-A*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small>* P-D-C-A : Plan, Do, Check, Action</small> ⑫ 우수성과 및 사례 발굴과 대내외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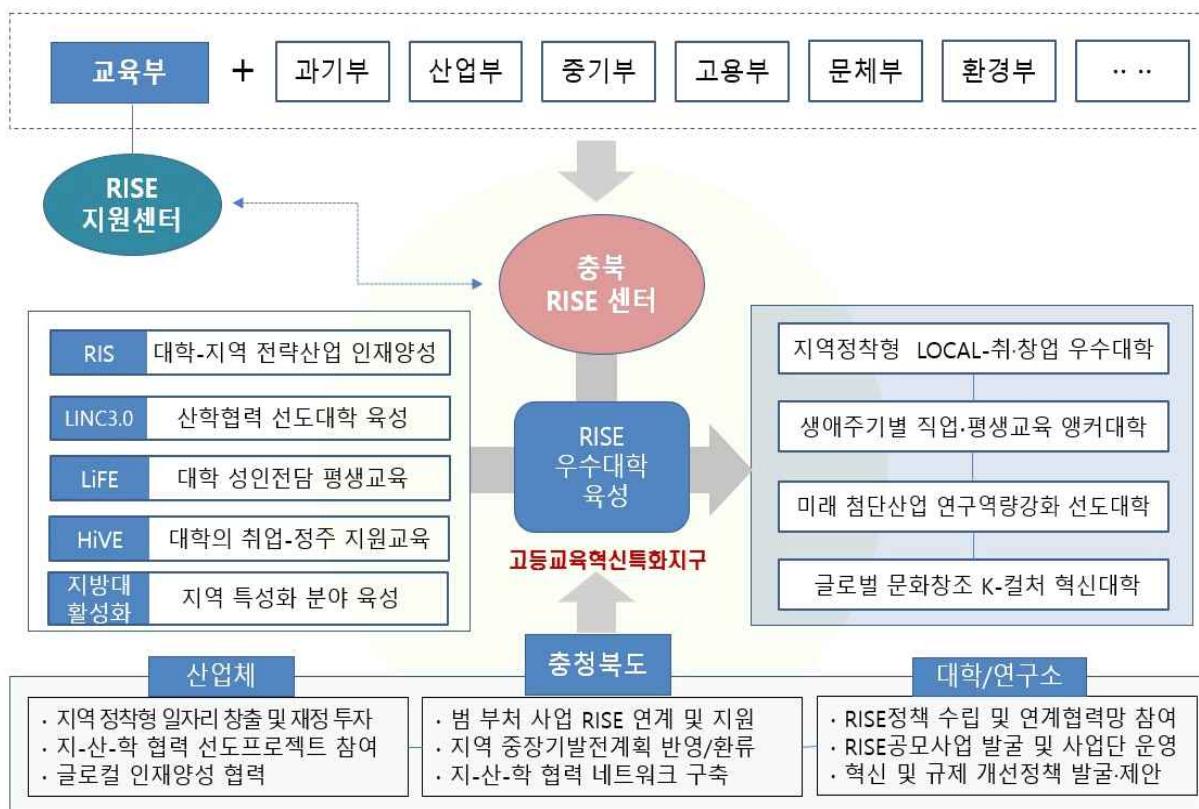
- '07년부터 추진된 대학산학관커플링 사업 등의 경험과 성과를 통해 지역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확대 추진
 -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인문, 예술, 자연과학, 공학 전공자를 지역수요 반영 인력양성('23년 20개 과정 969명 지원)
- 지역현안별 중점 대응대학을 지정·운영하여 지역대학을 지역현안의 원인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싱크탱크로 활용

7) 충청북도

- ① (전담조직) RISE추진단(지산학협력팀/대학혁신지원팀/전문인력양성팀/혁신캠퍼스조성팀)



- ② (전담기관) 충북연구원 산하에 RISE 센터 신설
- ③ (주요 특징)
 - RISE체계를 통해 중앙부처 재원을 활용하여, ①지역정착형 Local 취창업 우수대학 육성, ②생애주기별 직업·평생교육 앵커대학 육성, ③미래첨단산업 연구역량 강화 선도대학 육성, ④글로벌 문화창조 K-컬처 혁신대학 육성 등 충북형 대학지원 프로젝트 제안



3. RISE 관련 입법 동향 : [지방대학육성법] 일부개정(안)

1) 지역 주도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추진

- 그동안 국가주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하향식으로 추진하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탈피하여,
 -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국가는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의 계획을 뒷받침

○ 제5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개정
1항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6.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관한 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지원 및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지원----- ~ 5. (현행과 같음) 지역의 산업 · 사회를 연계하여 교육 · 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

	<p>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신설> 8. (생략)</p>	<p>7. ----- 채용촉진 및 지역정착----- 8. <u>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한 관계 중앙 행정기관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8호와 같음)</p>
3항	<p>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23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협의회----- ----- ----- -----.</p>
6항	<p><신설></p>	<p>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p>

○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1항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 ----- -----.</p>
2항	<p>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시행계획은 제23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3항	<p>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제7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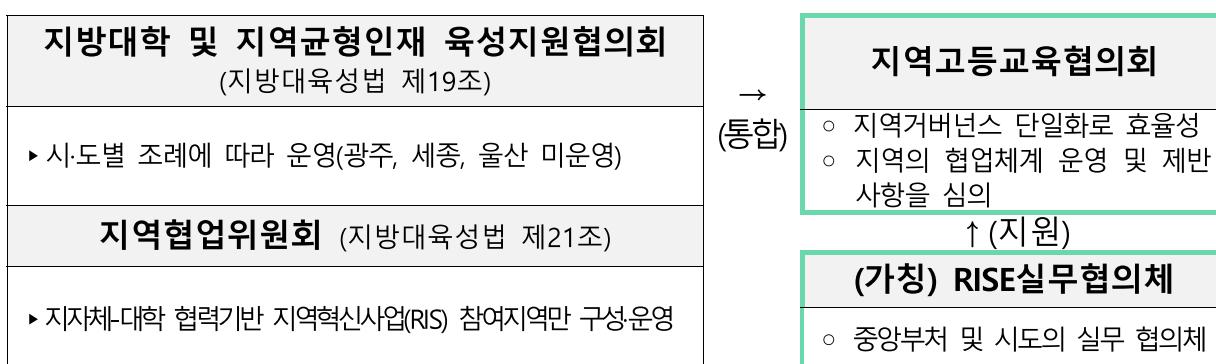
1항	<p><신설></p>	<p>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9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2항	<p><신설></p>	<p>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p>
3항	<p><신설></p>	<p>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p>

	<p>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p> <p>3. 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p> <p>4. 지역의 산업·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의 육성에 관한 사항</p> <p>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p> <p>6.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p> <p>7.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

2) 2025년 시행 예정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자체-대학 간 탄탄한 파트너십과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 필요
- ①RISE의 법적근거를 확립하고 ②지역거버넌스를 정비하며 ③국가와 지자체의 계약을 명문화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RISE 체계를 지원
 - (RISE) 목적 및 정의에 RISE 신설하여 근거규정 마련(제1조, 제2조)
 - 수도권에서도 RISE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근거 확립(제19조 제1항)
 - (지역거버넌스) RISE 센터와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근거 정비
 - 지역RISE센터(전담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출연 근거를 신설(제24조)
 - 중앙RISE센터(전문기관) 운영 근거 조문 신설(제25조)
 - 지역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등교육협의회로 일원화(제23조)

<지역 내 거버넌스 통합·조정(안)>



- (대학지원협약) 국가와 지자체 간의 계약 근거 신설(제19조 제2항내지제4항)
 - 지역성(지역주도·자율), 재정지속성(투자분담), 상호성(상호간 행정협약)을 통한 지역 혁신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학지원협약 제도’ 도입
- (데이터기반) 현장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제27조)

① RISE의 법적근거 정비

○ 제1조 (목적) 개정

본문	<p>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 <u>지원과 지역혁신중심의 대학지원체계의 구축에 -----</u> -----.</p>
----	--	--

○ 제2조 (정의) 신설

3호	<p><u><전부 개정></u></p>	<p>“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을 통해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p>
----	-----------------------------	---

○ 제19조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신설

1항	<p><u><신 설></u></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하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촉진하여야 한다.</p>
----	---------------------------	---

■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각 주체의 권한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계획	종합계획 수립	-	-
	기본계획 지원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확인	시행계획 수립	-
위원회 등	육성지원위원회 운영	-	-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참여 (공동위원장)
RISE운영	중앙 RISE 센터 운영	지역 RISE 센터 운영	-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지원협약 체결	대학지원협약 체결
규제특례	심의	신청 및 지역내 대학 적용	신청 및 적용

② 지역거버넌스 정비

○ 제23조 (지역고등교육협의회)

개정

1항	<p><u>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대학 · 산업체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p>	<p>제19조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각 시 · 도에 지방자치단체, 고등 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변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u> <u>2. 제22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2항	<p><u>협의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u></p>	<p>지역고등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p>

○ 제24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개정

1항	<p><u><신 설></u></p>	<p>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2항	<p><u><신 설></u></p>	<p>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내 전담기관이 대학지원 · 평가 · 관리 · 조사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3항	<p><u><신 설></u></p>	<p>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p>

○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신설

1항	<p><u><신 설></u></p>	<p>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2항	<p><u><신 설></u></p>	<p>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p>
3항	<p><u><신 설></u></p>	<p>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

○ 제26조 (협의체의 구성 · 운영)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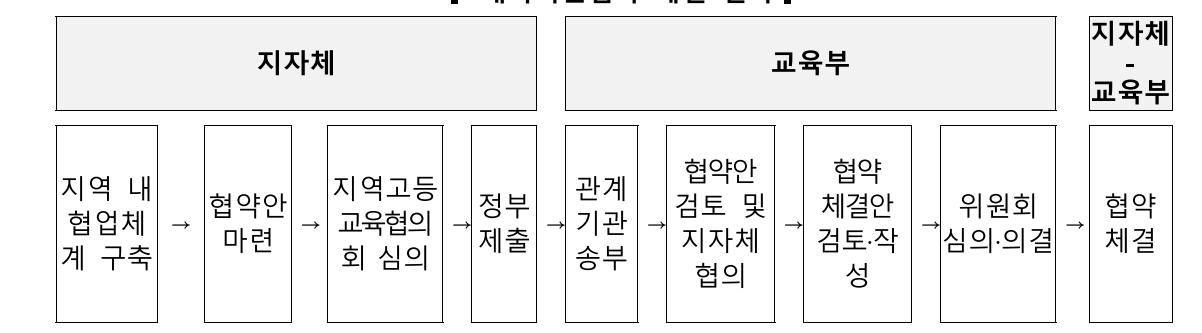
1항	<신 설>	교육부장관은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3)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근거 명문화

○ 제19조 (대학지원협약의 체결 등) **신설**

2항	<신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대학지원협약(이하 "대학지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항	<신 설>	제2항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지역고등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지원협약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항	<신 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예산의 편성과 규제개선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학지원협약 체결 절차



④ 데이터기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의 근거 마련

○ 제27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정보 축적 등) 신설

1항	<u><신 설></u>	교육부장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 및 실적, 지원의 성과 및 평가, 실태조사 자료 등 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할 수 있다.
2항	<u><신 설></u>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를 공유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학술활동과 관련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3항	<u><신 설></u>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관리 및 효과적인 유통·활용을 위하여 전문관리기관 및 협력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항	<u><신 설></u>	교육부장관은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규제 특례 제도 개선

- 고등교육혁신톡화지구의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대학 변화,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지원에 진입장벽이 존재
 - 담대한 변화와 벽을 허무는 혁신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신청가능한 지방대학 중 65.1%의 글로컬대학 신청으로 대학의 변화 의지 확인)
- ①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②규제특례 절차의 간소화로 대학·지자체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담대한 혁신 지원
 - (글로컬대학) 글로컬대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확립(제20조)
 - 산업 이외의 영역에서도 수요기반 혁신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개정
 -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규제특례) 대학·지자체의 수요에 맞춘 규제특례(제21조, 제22조, 제27조)
 - 기존의 고등교육혁신톡화지구의 조성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절차 효율화
 - RISE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도 지역 내 대학의 필요한 혁신을 위하여 규제특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규제특례 운영방식 변화>



① 글로컬대학 등 혁신선도 대학에 대한 지원

○ 제20조 (혁신선도 대학의 지정 등) [개정]

1항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u>지방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u>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의 산업 · 사회를 연계하여 교육 · 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대학을 혁신선도 대학으로-----
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특성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단서 신설>	----- 혁신선도 대학을 ----- ----- 다만, 이 경우 지방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5항	<신 설>	교육부장관은 혁신선도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학 · 지자체 중심의 규제특례

○ 제21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 [신설]

→ 대학 · 지자체가 수요에 맞추어 직접 신청

1항	<신 설>	제19조에 따른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20조에 따라 혁신선도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대학의 혁신에 필요
----	-------	--

		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2항	<신 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제22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의 후속조치 등) 신설

1항	<신 설>	제21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2항	<신 설>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3항	<신 설>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1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항	<신 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 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지역별 RISE 추진 및 연구 최근 동향

1. 부산광역시

1) RISE 계획 수립 준비

- 부산시는 RISE시범사업 선정 등에 따라 RISE계획 수립 진행
 - 기본계획 기간: 2025~29년 5년간(시범운영 계획기간 2023~2024년 제외)
- RISE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하였는데, TF운영은 부산테크노파크(지산학협력단)이 주관하였으며, 초안도 TP가 주도하여 금년 4월부터 작성 중에 있음

2) RISE 계획 주요 내용

1) 비전, 목표, 추진전략

- RISE 추진전략 도출(안)
 - 비전: RISE 체계 기반 지역·지역대학 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 실현
 - 목표: 부산형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기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 추진전략: 지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

<RISE계획 비전, 목표, 추진전략 체계>

비전	RISE 체계 기반 지역 ·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및 지속성장 실현		
목표	부산형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 기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지산학협력 체계 구축 대학교육혁신 · 인재육성	지역산업 · 기술혁신 선도 취 · 창업 저변 확대	지역대학 글로벌 위상 강화 지산학 동반성장 · 사회기여 강화

2) 추진전략 주요 사항

① 지산학협력 체계 구축

- 지산학 총괄 운영방향 제시 및 계획을 위한 통합형 최상위 거버넌스 구축·운영
- 주요 추진분야별 지역사회·산업수요 발굴과 지역대학과의 연계협력 분야 도출을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운영
- 지자체 내 대학전담부서와 RISE전담법인의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② 대학교육혁신·인재육성

- 급격한 산업환경 및 교육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 대학교육혁신 지원 추진
- 지역사회·산업이 요구하는 인재육성 강화
- 대시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직업훈련 활성화

③ 지역산업·기술혁신 선도

- 지역대학의 연구개발(R&D, R&BD) 역량을 기초연구, 정부 주도 산업분야에서 지역사회·산업 수요 기반 공동연구개발 생태계로 전환하여 지역성장 촉진 기반 확충
- 대학보유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연계 공동R&D 확산 추진
- 대학 보유 인·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업 R&BD(비R&D)지원 강화

④ 취·창업 저변확대

- 지역대학과 지역 혁신기관 등에 산재된 취·창업 혁신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정주 연계·강화형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⑤ 지역대학 글로벌 위상 강화

- 지역대학의 글로벌 대학 선정 집중 지원과 선정대학의 혁신 패러다임 지역내 확산 추진

⑥ 지산학 동반성장·사회기여 강화

- 지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기여·성장 생태계 조성
- 지역대학 보유 인프라의 대시민 개방 및 연계 활용도 제고 증진

3) 지역수요 기반 4대 중점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1] 지역사회·산업의 성장동력 확산을 위한 지역대학 혁신 전환

- 혁신성장형 지산학협력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규제 발굴 및 개선
- 대내·외 환경변화 및 수요 대응을 위한 학사제도 및 교과 개편
- 지역대학간 핵심역량 기반 공유·협업 중심 특성화 모델 발굴
- 학습연령 경계 없는 전 주기적 고등교육혁신 확산 생태계 구축

② [프로젝트 2] 지역이 키우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양성

- 지산학협력 기반 지역사회·산업 견인 인재양성
- 첨단산업 미래선도 지역과학기술 인재양성
- 지역 미래먹거리 창출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인재양성
- “교육–취·창업–정주”의 전주기 순환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

③ [프로젝트 3] 지산학 협력 주도의 지역산업·기술혁신

- 지역대학–산업계(기업)간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지역대학 보유 인프라 연계 지역산업기술혁신 성장 지원
- 지산학협력 기반 R&D 혁신 고도화
- 글로벌 도약 지역기업 육성 지원

④ [프로젝트 4]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및 글로벌 위상 강화

- 지역사회 현안·문제해결 위한 지역대학 이겨 강화
- 지역사회·산업 수요기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정착 기반 마련
- 지역 국외투자기업과의 글로벌 산학협력 교류 증진
- 대시민 문화·복지, 국민건강 증진 위한 대학 인프라 적극 활용·개방

4) RISE 추진체계

(1) 총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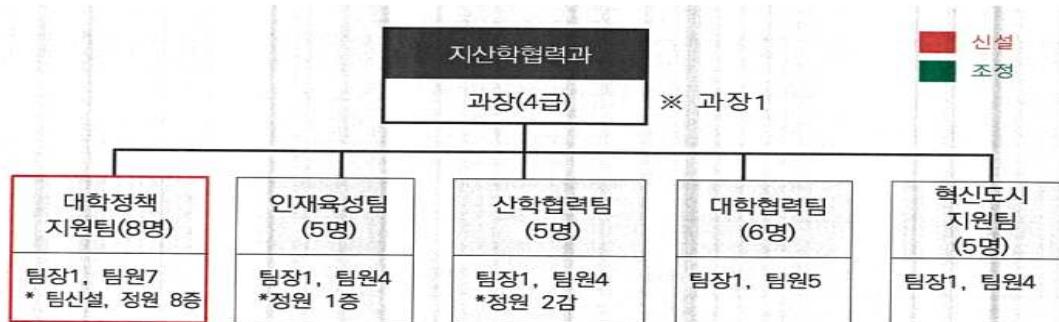
- 지역혁신 주체간 지속적인 교류·소통에 의한 지역대학혁신 지원계획 수립, 운영, 평가, 조정 및 환류 등 정책의 전과정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결집 체계 구축

(2) 담당 조직 준비

① 지자체

- 부산시는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에 RISE전담조직인 대학정책지원팀 신설
- 4개팀 총 23명=>5개팀 30명(중 7명)

<부산시 담당과 조직구성도>



대학정책지원팀	인재육성팀	산학협력팀	대학협력팀	혁신도시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E시범지역 운영(총괄)• RISE중장기 계획 수립• 글로컬대학 육성지원• 대학지원 전담법인 운영• 고등교육 규제개혁 발굴• 고등교육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혁신플랫폼사업 추진•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 지산학통합 e플랫폼 운영• 기업수요 기반 지산학 협력 인재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C 3.0 육성사업• 대학 혁신연구단지 조성• 캠퍼스 혁신팩크 조성• 지산학 연결 총개 촉진지원• 대학R&D씨앗기획사업• 지산학 브랜치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기금 관리 및 운용• 지역인재 장학금 운영• 외국인 유학생 종합지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대학협력관(소통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혁신도시발전기금 운영• 혁신도시 연계 혁신캠퍼스 지원• 부산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입주기업 지원• 이전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

② RISE전담기관

- 부산시 지산학협력사업을 위탁수행하고 있는 부산지산학협력센터를 RISE전담기관으로 지정
- 2개팀 10명 => 5개팀 32명(중 22명) 구축 예정임

2. 대구광역시

1) 전담기관(대구RISE센터) 구축

① 대구RISE센터 일반 현황

- 대구 지역 RISE 사업 전담기관 지정 : 대구정책연구원(2023.7.26)
- 센터 사무공간 : 대구정책연구원 건물 내 별도 사무공간 마련

② 대구RISE센터 조직 및 직원 현황

- 3개 팀으로 센터 조직 구성(전략기획, 지산학협력, 성과관리)
 - 연차별로 기능 확대에 따른 팀 설치 추진

<대구RISE센터 조직도(안)>



<팀별 업무분장(안)>

팀명	주요 업무	구성원	비고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전략기획팀	RISE 계획 수립 및 보완 사업 비전/목표 관련프로젝트 및 과제 발굴 RISE 실무추진단 운영 대학별 특성화 방향 도출 성과목표 수립(성과계약) 예산계획 수립	정규직원 1명 배치 위촉연구원 채용(예정)	Plan '23년
지산학협력팀	기업-대학 간 혁신성과 창출 위한 제반 지원 대학·기업·유관기관간 네트워킹 기반 협력 추진 사업계획의 대학별 추진실적 추적 및 관리 사업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이슈별 대응 및 문제해결		Do '24년
성과관리팀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대학별 사업 실적 모니터링 평가매뉴얼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전문평가단 구성 및 대학별 추진실적 달성을 평가		See '25년

③ 대구RISE센터 2023년 주요 추진 과제

○ 대구RISE센터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여건 전망을 통한 중장기 전략 방향 도출
- 중장기 전략방향에 근거한 전략목표 및 과제 정의

○ 취·창업 분야 프로젝트 및 과제 중점 발굴

-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분야별 취·창업 지원 사업 확대
- 산학협력, 평생교육, 직업교육, 연구지원 등 분야별 취·창업 지원사업 발굴
- BSC 기반 사업성과지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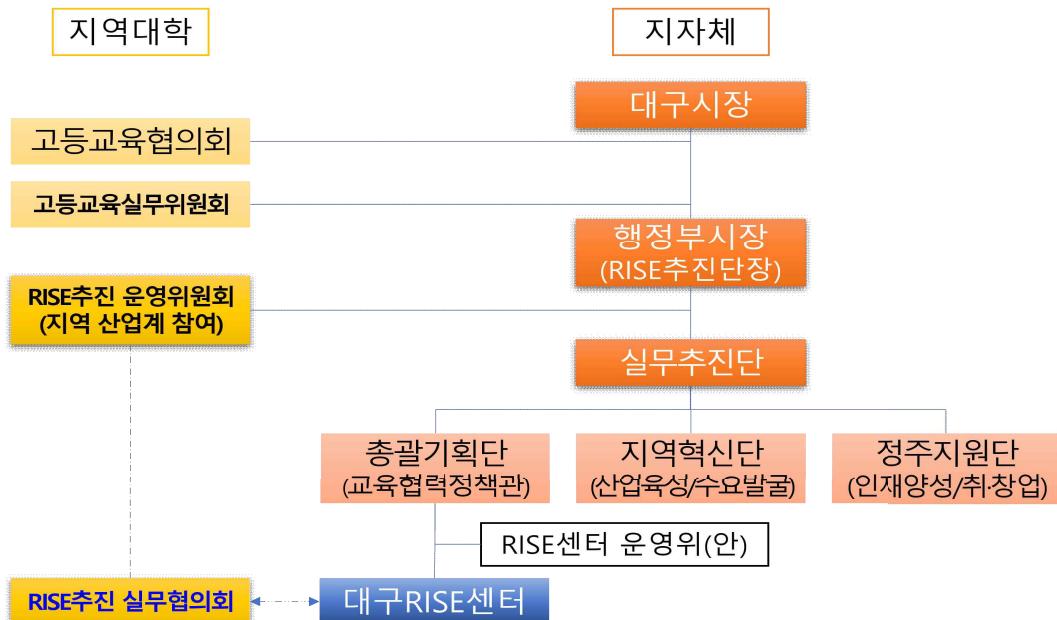
○ 프로젝트 및 과제별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체계 구축

- 대구시 전체, 분야별, 대학별, 프로젝트별 성과목표·지표(CSF, KPI) 도출
- 시정 전략방향과 RISE 사업간 연계성 제고
- 대구시 국비사업 유치와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투자 지향
- 대구광역시 단위의 고등교육 분야 교육자치 실현

④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경과

- RISE 추진 운영위원회 기능의 실무적 뒷받침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현재 10개 대학, 대구시, RISE센터 중심)
- 실무협의회에서 프로젝트별 세부사업 제안, 예산, 성과지표 정교화 추진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RISE 추진 실무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산업체 대표, 지역혁신지원기관 등 참여 범위 확대

2) 대구광역시 RISE계획 수립 연구

① 연구주제 및 연구기관

- 연구주제 : 대구광역시 RISE계 수립 연구

- 연구기관 : 대구정책연구원

② 연구의 주요 내용

- 지역여건 및 대학분석

- 지역 일반 현황
- 지역 산업 현황
- 지역 성장 전략
-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참여 분야
 - 산·학 연구개발 확대 → 미래 신산업 육성
 - 지역 정착 기술인력 양성 → 미스매치 해소
 - 도전적인 인재 양성 → 창업/창직 활성화
 - 평생교육 확대 → 정주 만족도 제고
 - 대학 자원 개방 및 공유 → 지역혁신 활용

- 지역현안 진단

- 우수인재 수도권 유출 및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도권 집중
- 지역대학(특히, 인문계열) 취업률 저조
- 지역대학 재정 악화, 투자 여력 감소
- 대학지원사업의 참여 분야 및 기회 한계
- 대학 간 학점인증제가 일부 대학에 한정

- RISE 계획(안)

- 목표 및 핵심분야

- 목표 : 미래형 혁신인재 3만명 양성, 대학주도형 2대 지역혁신, 미래형 일자리 1만개 창출
- 3대 추진전략 : 인재혁신(지역산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대학혁신(산업경쟁력 제고와 청년유출 문제를 대학이 주도적으로 해결), 일자리혁신(지역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 대학이 창업의 허브)
- 6대 프로젝트 : 5대 미래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산단 캠퍼스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사회로 열린 대학 프로젝트, 맞춤형 파워풀인재 양성 프로젝트, 대학 창업허브 활성화 프로젝트

- 균형성과관리(BSC) 관점의 RISE사업 성과체계(안)

- BSC 성과관리 관점의 일반 룰을 RISE사업 성과에 적용
- 단편적 성과창출보다 균형적/전략적/중장기적 성과 관리에 초점
- 4대 성과 관점 설정 : 지역사회, 일자리, 대학, 기반구축
- 주요 사업성과(핵심성공요인 CSF) 간 선후관계 고려
- 핵심성과요인의 측정지표(KPI) 도출 및 구성원 합의 중요

3. 충청북도

1) 운영근거(자치법규) 마련

○ 조례명: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23년 07월 03일 조례 제4937호

○ 주요내용

-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함/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 센터의 기능

- | |
|--|
| 1.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
| 2.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
| 3. 지 · 산 · 학 · 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
| 4.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 |
| 5.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 |
| 6. 그 밖에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관리 · 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 ·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도 · 감독: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 · 점검하게 할 수 있음

2) 충북도청에 전담조직 신설

① 전담부서 신설

- 전담부서는 과학인재국 산하 라이즈추진과에서 담당
 - 충청북도 청년인재육성과를 ‘라이즈추진과’로 개편
- 전담부서 규모는 3팀 18명으로 구성
 - 지산학협력팀 6, 평생교육·대학혁신지원팀 6, 전문인력양성팀 5



② 역할 및 기능

- 충청북도 라이즈추진과는 충청북도 RISE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충북RISE계획 수립, 사업 성과관리, 글로컬 대학관리, 지산학협의체 운영, 충북RISE센터 지원 등
 -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운영, 관리, 규제혁신, 평생교육 등
 -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전문인력 수급 분석 및 대책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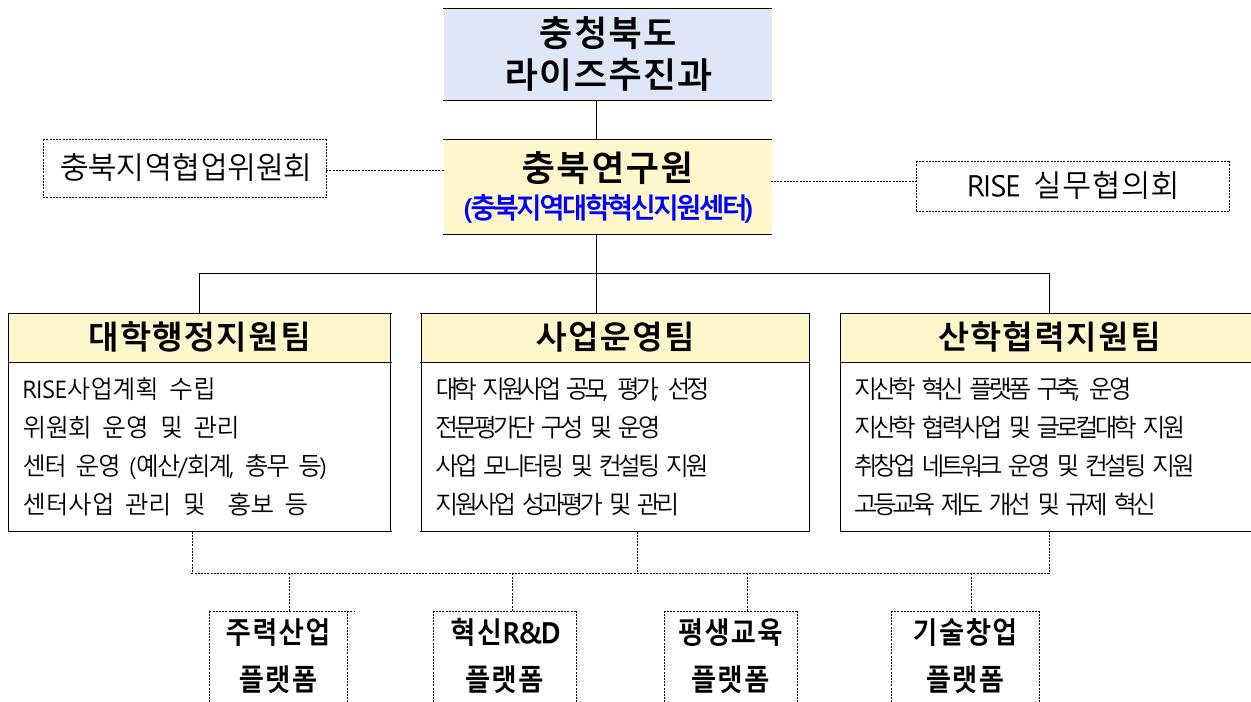
3) 운영주체(센터) 지정

① 설치 및 구성

- 충청북도는 충북연구원과 RISE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RISE 전담기관으로서 충북연구원에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 설치 근거 :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4937호)

○ 전담기관 조직은 3팀 13명으로 구성

- 센터장(1) : 충북연구원 박사 겸직
- 직원(12) : 대학행정지원팀 4(파견 1명, 충북도 파견 사무관), 사업운영팀 4, 산학협력지원 팀 4



② 역할 및 운영

○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는 충북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충북 RISE 계획 수립, 대학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지산학협력협의체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대학행정지원팀 : RISE사업계획 수립,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및 관리, 센터 운영 및 관리(예산/회계, 총무 등), 사업 홍보 등
- 사업운영팀 : 대학 지원사업 공모·평가·선정, 전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관리 등
- 산학협력지원팀 : 지산학 혁신 플랫폼 구축, 운영, 지산학 협력사업 및 글로컬대학 지원, 취창업 네트워크 운영 및 컨설팅 지원, 고등교육 제도 개선 및 규제 혁신 등

○ 충청북도는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충북연구원 규정과 센터 운영규칙에 별도로 정함

4. 충청남도

1) 최근 동향

- 충청남도는 최초 RISE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했으나,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자체 라이즈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음
- 도는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도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원장 직속기관으로 라이즈센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음
- 라이즈센터는 2025년까지 3개팀 24명까지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센터 장과 직원을 공개모집 중인 것으로 아려려 졌음

2) 최근 연구과제 수행 동향

- 충남도는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 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위로하여 수행 중에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 충남의 비전 및 목표
 - 충남형 고등교육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도출
 - 지역발전전략 분석
 - 지역발전전략 중 고등교육 분야 분석
 - 충남 지역 여건 및 대학 현황 분석
 - 충남 지역 여건 분석
 - 충남 대학 여건 분석
 - 지역과 대학의 연계 현황 분석
 - 충남 RISE 추진 내용
 - 핵심 분야
 - 핵심 분야별 전략 목표
 - 전략별 사업 내용
 - 사업 운영 관리
 - 재정투자계획 수립
 - 예산 기획 및 적정성 수립
 - 예산 집행 및 관리
 - 성과관리 방안
 - 핵심분야별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성과 분석 및 평가 방안
 - 성과 확산 및 환류 방안

5. 전라북도

1) 추진계획

- 전라북도는 시범지역 선정 당시 제안했던 전담조직으로 과도기를 거쳐 획장기에는 ‘지산학협력과(대학정책팀/대학혁신팀/대학협력팀/산학협력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획립기 조직도



- 또한, 시범기간중 전담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산하 JB지산학협력단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2025년이후 별도 법인을 신설한다는 계획임

2) 관련 과제수행 최근 동향

-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RISE 기본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전북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5월부터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 비전 및 목표
- 지역과대학의 연계 현황
 - 여건분석(지역산업 여건/ 지역대학 여건/ 지역정부 현황)
 - 대학-지역간 연계내용과 RISE 관련성, 정합성(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등)
- RISE 추진체계
 - 지역 RISE 추진체계
 - 중앙 RISE 추진체계
- 추진내용
 - 프로젝트 구성 및 목표
 - 프로젝트 목표

- 프로젝트 내용
- 프로젝트 운영관리
- 재정투자 계획
- 재정투자 및 관리계획
- 예산 편성 집행관리 계획
- 성과관리 계획
- 성과분석 및 평가
- 성과 확산

6. 경상북도: 센터운영계획을 중심으로

1) 경상북도 RISE센터 조직 및 운영(안)

- (조직) 1센터 2팀 총10명(센터장1, 팀장2, 직원7)



- 경북연구원내 (가칭)라이즈센터 출범 실무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경북연구원(6명), 경상북도(3명)
- 신규인력 채용
 - 경북 라이즈센터 출범 준비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경북 라이즈센터 운영 계획 및 규정 수립
 - 경북 RISE센터 운영에 필요한 팀장급(1명)과 팀원(1팀) 등 우수인재를 우선해서 채용하여 RISE 센터 출범 실무추진 사업 진행
- 경북도 직원 파견

- 라이즈 센터-경상북도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경상북도에 전문 인력 파견 요청
- 향후 경상북도 라이즈 센터 법인 설립 지정을 위한 연계협력으로 대학지원 사업관리, 사업평가, 재정집행 역할을 지원할 파견 전문인력 필요
- 경상북도 5급 1명, 6급 1명 파견 요청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총괄안)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프로젝트 수행

**● 경북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기반 허브 수행
(‘경북 RISE 사업 추진단의 주요 업무’)**

1. RISE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 지원

- 대학과 지역산업 연계 강화, 지역인재양성-취 창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분야별 세미나, 포럼 개최 등(사업 플랫폼 구성 운용 등)

- 산업경제, 산학협력, 평생 직업교육 등 지역수요 반영 분야 등

3. 시범사업 유치 제안, 대학-기업 연계협력 우수 정책사례

- 글로컬대학 공모, RIS(지역혁신), LINC 3.0, LIFE, HIVE 등 우수사업성과 연계 등

4. 대학 및 유관 기관 네트워크 지원 및 센터 운영

- 경북연구원, 대학, 경북TP 기타 유관 기관과 협력 및 **센터운영** 사업

**4개
사업의
유기적
연계
운영**

3) RISE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① 지역인재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확인

- 지역고등교육현황(대학 현황),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경상북도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및 전략과 각종 계획 확인

② RISE 사업의 기본 구상 및 5년간 운영계획

- 사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마련

- 연도별 운영계획 및 예산집행, 운영규정, 추진체계 수립

- 연차별 재정관리 및 투자계획 등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③ RISE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

- 경상북도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한 지역실수요 기반 대학 지원 계획 및 사업

- 기존 경북도내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산단 지정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 계획과 연계

- 대학이 창업의 거점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창업지원 프로젝트 반영
 - ※ 지역대학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 개발
- ④ RISE 사업 성과 평가 방안 및 기타(안) 마련
- RISE 사업의 운영 성과분석 방안 마련
-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계 영향분석 방안
- 경북 RISE센터 구축과 운영 방안 및 관련 제도(법률, 조례)와 계획 검토(광역시도 간 연계 사업 검토 등)
- 지역대학과 지자체간 협업 우수 해외 사례 발굴, 경북도 적용 모델 제시
 - ※ 환경분석, 전략방향, 제도마련, 성과분석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작성

4) 분야별 세미나 및 포럼 개최(안)

- 핵심 이슈에 대한 정책 세미나, 포럼 운영 및 정책아이디어 회의
 - 교육 대전환 정책이 지방 대학 시대를 이끌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지속 논의 필요
 - 정책세미나 이외 소규모 대학-기업 연구 플랫폼 구성 운용 등

<포럼 등 운영 개최 (안)>

포럼 및 세미나 유형	내용
경상북도 RISE 포럼 운영	- 지역여건, 대학 특화지원 사례 공유 향후 5년간 RISE 추진계획 비전 제시
해외우수인재양성 벤치마킹 및 포럼	- 해외우수대학 인재양성 벤치마킹 - 글로컬 대학 육성방안 모색
경북 권역별 포럼	- 고등교육 권한이양에 따른 지역 여론 수렴
지역대학 총장 간 포럼	-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 ※ 지역고등교육협의회 신설추진을 위한 준비 포럼 등

주 : 관련 세미나는 현안 문제도 접근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및 정책 포럼 운영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기획보고서(RFP)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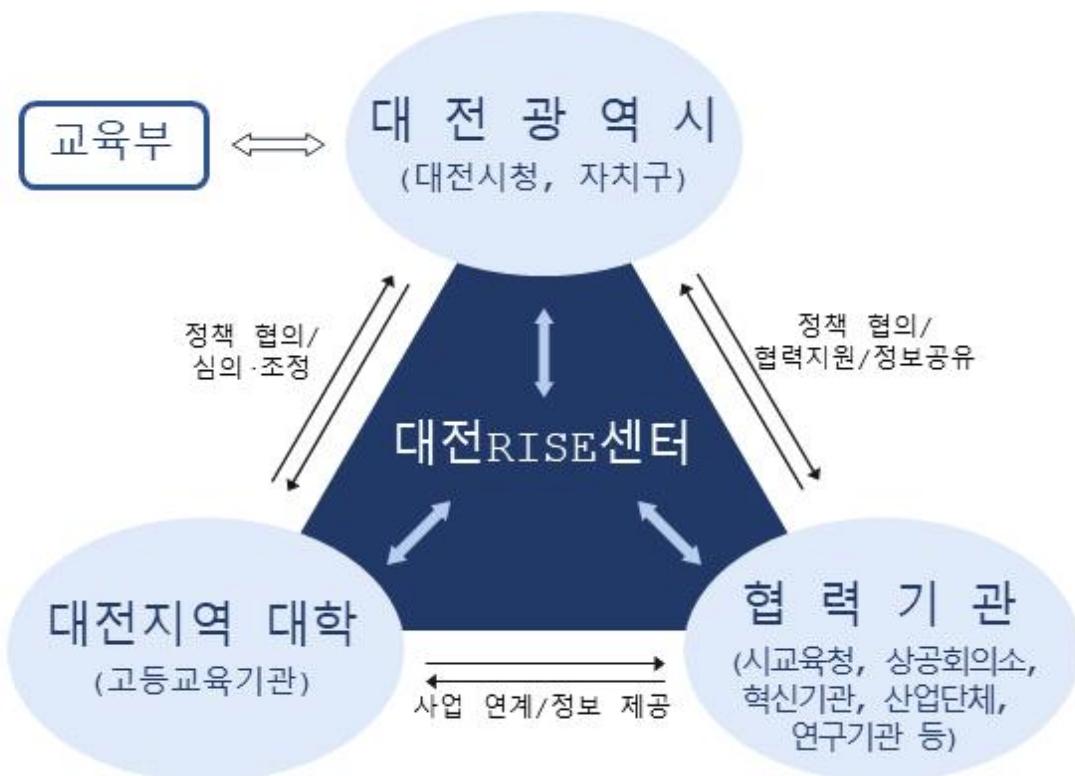
- (사례) 경북 4대 권역별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및 RISE사업 추진방향 마련
 - (포항권) 국가 차원의 R&D와 글로벌창업 생태계 구축
 - (안동권) 의료바이오산업 중심의 지산학연 협력방향
 - (경산권) 도내 최고의 대학밀집지 기반의 다수대학 연합협력 중심의 발전생태계 구축 방향

IV. 대전시 RISE 추진체계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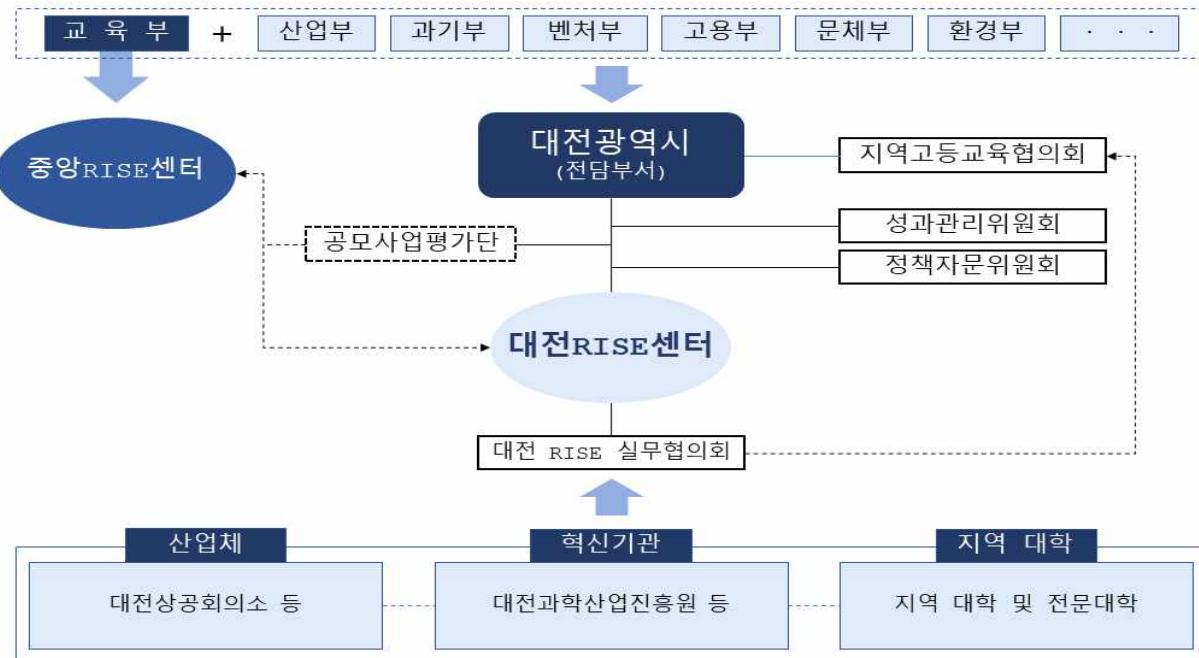
1. 대전광역시 RISE 추진체계 구상

1) 대전시 RISE 정책 협력망

- 대전시 RISE 정책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대전지역 지·산·학 등의 참여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 및 지역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자체, 지역대학, 유관 협력기관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전지역 RISE 정책협력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대전 RISE 센터가 RISE 정책 협력망의 연계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함



2) 대전시 RISE 추진체계도(안)



2. 참여주체 및 역할

1) 추진조직 및 역할

① 중앙정부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교육부(지역인재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E 관련 법령 정비 및 사업 예산 확보 범부처 협력사항 발굴 및 연계지원방안 마련 지방대학, 산학협력 등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제도 혁신 정책 홍보, 국내외 사례관리 및 전파
범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산학연 협력사업의 RISE 연계방안 마련 RISE사업 연계를 위한 부처별 공모사업지침 마련 및 적용 교육부 제안 규제개선사항 검토 및 관련 제도 개선 부처별 상호 관련정보 공유 및 취창업 지원 협력
중앙 RISE센터 (한국연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RISE사업계획 수립 지원 RISE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협력네트워크 운영 공모사업 평가단 DB 공유 및 연계 활용 지원 시도 RISE센터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교육 및 워크숍 등) 시도 RISE사업 운영점검, 관리, 평가 등

②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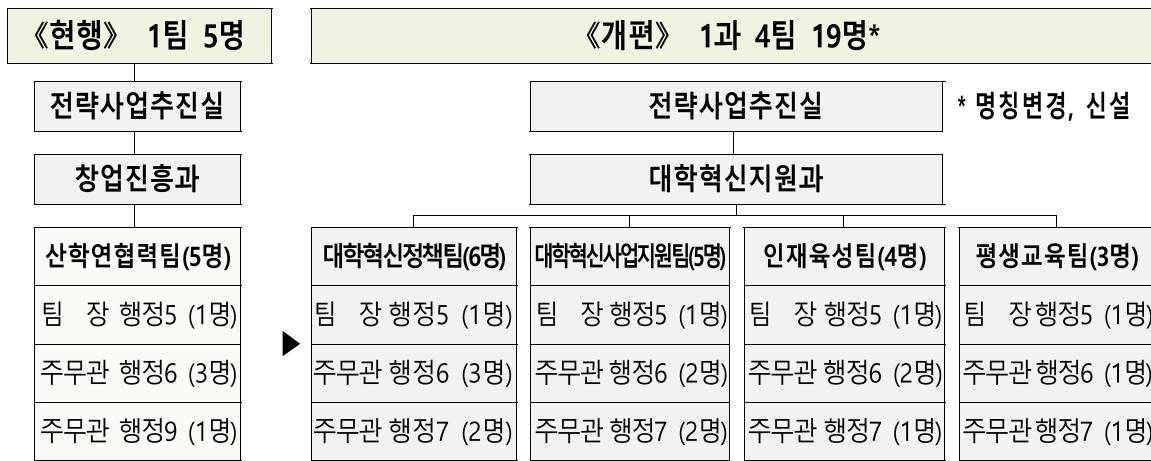
구 분	주요 기능 및 역할
대전광역시 (전담부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선,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고등교육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 • 산학협력사업, 대학 창업공간 조성, 취·창업 지원, 타부처 교육 사업 연계체계 구축, 출연연 연계 대학교육 혁신 • 실무기술인재 양성, 4대 전략산업 중심 인재 양성,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대학 공유 플랫폼 운영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 (LiFE),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교육
대전광역시 고등교육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기본(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 대전 RISE 공모사업 선정결과 심의 • 대전 RISE 정책 협의 및 조정 • 고등교육 혁신 제도개선 사항 협의 및 조정
성과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지원사업 성과 평가 • 성과지표 및 사업 개선방안 발굴 •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방안 제시 등
정책자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야별 자문 • 대전 RISE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
공모사업 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지역 RISE 공모사업 평가 및 선정 • 공모사업 평가체계 및 절차 개선방안 제안
대전시 RISE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 대전 RISE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RISE 지원사업 운영 관리 및 컨설팅 지원 • 대학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 RISE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사례관리 • 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운영 지원 • RISE정책 홍보 등
대전RISE실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RISE 시행계획 등 고등교육협의회 안건 사전 검토 • 공모사업 지침 및 매뉴얼 구축 지원 • 지산학 협력 모델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 지산학 연계 취·창업 지원

2) 대전광역시 전담부서 구성(안)

① 전담부서 신설

- 전담부서는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에 ‘(가칭)대학혁신지원과 또는 (가칭)RISE 추진과’를 신설하여, 시의 RISE 사업을 총괄함
 - 현재 대전광역시 창업진흥과 산학협력팀을 RISE 관련 주무 부서로 확대 개편
 - 현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시도 중 부산시는 ‘지산학협력과(5개팀, 29명)’, 충청북도는 ‘라이즈추진과(3개팀, 18명)’, 전라북도는 ‘지산학협력과(4개팀, 18명)’ 등 전담부서를 구성한 상태임
- 전담부서 규모는 4팀 19명으로 구성
 - 대학혁신정책팀 6명, 대학혁신지원사업팀 5명, 인재육성팀 4명, 평생교육팀 3명

<전담부서 구성(안)>



* 명칭변경, 신설

② 역할 및 기능

- 대전광역시 전담부서는 대전광역시 RISE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규제개선, 지역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고등교육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
 - 산학협력사업, 대학 창업공간 조성, 취·창업 지원, 타부처 교육사업 연계체계 구축, 출연연 연계 대학교육 혁신
 - 실무기술인재 양성, 4대 전략산업 중심 인재 양성,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지역대학 공유 플랫폼 운영
 -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HiVE),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LiFE), 지역산업 연계 재직자 교육

3) 대전광역시 고등교육협의회

① 설치 및 구성

- 지자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설치, 운영
 - 지방자치단체 장은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
- 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혁신기관, 산업체 등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 (의장) 대전광역시 과학부시장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
 - 협의회 간사는 대전광역시 전담부서 공무원이 담당

② 역할 및 운영

- 협의회는 대전 RISE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RISE 계획 수립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조정하는 역할 담당
 - RISE 기본(시행)계획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대학지원협약 체결 및 이행 등
-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하여 수시 개최 가능

4) 성과관리위원회

① 설치 및 구성

- 대전광역시는 RISE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위원회를 설치
 -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는 관련 조례에 명시
- 성과관리위원회는 지자체, 혁신기관, 전문평가기관, 언론사, 연구기관, 지역대학협의회 등의 성과관리 전문가 등 8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 과학부시장
 -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 전담부서장이 담당

② 역할 및 운영

- 성과관리위원회는 대학지원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 성과지표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역할을 담당
- 성과관리위원회 개최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성과 점검사항 및 성과 지표 개선 등의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성과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 및 예산을 지원
- 전담기관(대전RISE센터)은 성과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필요한 성과분석 자료 제공 및 위원회 운영 지원

5) 정책자문위원회

① 설치 및 구성

- 대전광역시는 미래 산업 및 교육 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과 RISE 정책 개선방향 도출 등 정책기획 및 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는 관련 조례에 명시
- 정책자문위원회는 국책기관, 혁신기관, 연구기관, 정책전문기관 등의 미래학자 및 실무책임자 등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 전담부서장이 담당
- ② 역할 및 운영
 -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및 산업 관련 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에 따른 정책 대응방향, 대전 RISE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담당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자문 필요사항 발생시 수시 개최
 - 대전광역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인력 및 예산을 지원
 - 전담기관인 대전RISE센터는 정책자문위원회 안건 상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위원회 운영 지원

6) 대전 RISE 센터

① 설치 및 구성

- 대전광역시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학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대전세종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RISE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RISE 전담기관으로서 설치
 - 설치 근거 :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 RISE센터’ 관련 조례
 - 타시도의 사례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의 전담기관 설치안에서는 정책연구원이 3곳(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2곳(부산광역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2곳(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임

<지역별 라이즈센터 지정·운영 예정 기관>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가칭 인재양성재단으로 전환 추진)	경북연구원 → 2025년 이후 법 인 별도 설립 추진	대구정책연구원 → 2025년 이후 법 인 별도 설립 추진	부산테크노파크	전남인재평생 교육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 2025년 이후 법 인 별도 설립 추진	충북연구원

- 유형별 장단점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의 전담기관 설치안에서는 정책연구원이 3곳(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테크노파크 2곳(부산광역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2곳(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임

<주요 전담기관이 장단점>

구분	정책연구원	테크노파크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전문연구 인력의 보유 및 종합적 연구경험 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정책연구원은 평생교육, 산업경제, 과학기술 정책, 고용정책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RISE 정책에 대한 융복합 및 내부적 협업이 가능한 것이 장점임 - 시도 정책연구원은 지역 경제 및 산업, 문화, 관광,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 박사급 전문 연구원을 보유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이 있어 대학과 관련된 여러 인력양성이나 R&D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역산업 및 기업 중심의 수요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인재양성, 그리고 그 인재들의 지역 취/창업과 정주 유도임 ○ 테크노파크는 오랜 기간 지역산업정책 수립과 기술혁신, 지역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온 지역대표 혁신기관으로 지역내 어느 기관보다 지역사회, 산업, 기업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간접적 연계협력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음 - 산업에 대한 이해, 단위 사업들에 대한 이해, 지역기업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부처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들을 기획하고 실제 추진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대학과의 협업구조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특히 지자체와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산업 및 사업지원 과정에서 대학들과의 협업체계도 누적되어 있어 향후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사업 추진 경험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정책연구관들은 정책개발, 사업개발 사업추진의 타당성 분석, 성과분석, 기대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무적인 사업 추진 경험은 약한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내부의 행정정책 추진 프로세스 및 이해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학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협력구조의 완성이 되면 무리없이 추진가능한 부분 ○ RISE체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평생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

- 전담기관 조직은 타 시도의 센터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센터장(1) : 수탁기관의 직원 또는 공모(충남 RISE센터)
 - 타 시도의 사례 : 현재 센터를 지정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곳은 부산광광역시(부산지산학협력센터, 2개팀 10명), 대구광역시(대구정책연구원에서 25년까지 3개팀으로 운영), 충청북도(충북연구원, 3개팀 13명), 충청남도(충남연구원, 24명), 경상북도(경북연구원, 2팀 10명) 등임
 -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구성(안) : 시범운영 기간인 2024년까지는 1팀장을 포함 10여명 선으로 조직하고, 정책시행 초기인 2025년부터는 약 20명 규모로 인력 구성
 -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타 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사례에서 나타난 조직 및 인력규모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대구 RISE센터 팀별 업무분장(안)>

팀명	주요 업무	구성원	비고
센터장	센터 업무 총괄		
전략기획팀	RISE 계획 수립 및 보완 사업 비전/목표 관련프로젝트 및 과제 발굴 RISE 실무추진단 운영 대학별 특성화 방향 도출 성과목표 수립(성과계약) 예산계획 수립	정규직원 1명 배치 위촉연구원 채용(예정)	Plan '23년
지산학혁신팀	기업-대학 간 혁신성과 창출 위한 제반 지원 대학·기업·유관기관간 네트워킹 기반 협력 추진 사업계획의 대학별 추진실적 추적 및 관리 사업 실행 모니터링을 통한 이슈별 대응 및 문제해결		Do '24년
성과관리팀	프로젝트 및 세부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대학별 사업 실적 모니터링 평가매뉴얼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 구축 전문평가단 구성 및 대학별 추진실적 달성을 평가		See '25년

② 역할 및 운영

- 대전 RISE센터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서 대전 RISE계획 수립, 대학지원사업 공모 및 관리, 대전 고등교육협의회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
- 향후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명기하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 규정과 센터 운영규칙에 별도로 정함

7) 공모사업 평가단

① 설치 및 구성

- 전담기관인 ‘대전 RISE센터’는 대전지역 RISE 공모사업의 원활한 선정 평가를 위해 공모사업 평가단을 구성, 운영함
- 전담기관인 ‘대전 RISE센터’는 공모사업 평가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
- 공모사업 평가단은 중앙 RISE센터 평가인력 Pool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선정 평가시마다 구성, 운영하며 공모사업 평가 완료시 해산함

② 역할 및 운영

- 공모사업 평가단은 대전지역 RISE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평가체계 개선 등의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공모사업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외비로 처리하며, 평가단 평가장소 입소 전 평가위원 Pool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필요인원 선정
- 공모사업 평가기간 중에는 외부 출입 및 연락을 차단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도록 하며, 공모사업 선정 발표시까지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함

8) 대전 RISE 실무협의회

① 설치 및 구성

- ‘대전 RISE센터’에서는 RISE 정책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와 지산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전 RISE 실무협의회를 설치
 - ‘대전 RISE센터’에서 RISE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 대전 RISE 실무협의회는 기획조정분과, 규제혁신분과, 취창업협력분과, 평생직업교육분과, 산업인력양성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음
- 실무협의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 혁신기관, 기업 등의 실무책임자 및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
 - (협의회장) 실무협의회에서 선출
 -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에서 선출
 - (간사) 협의회 간사는 대전 RISE센터 장이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분과위원회 중에서 선출

② 역할 및 운영

- RISE 실무협의회는 대전광역시 고등교육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위원회를 통해 RISE 정책 추진을 위한 지산학 협력사업 모델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
- RISE 실무협의회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별 과제와 책무를 부여하여 수시 개최
- 대전 RISE센터는 운영규칙에 따라 RISE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는 사항을 규정함

3. 운영근거(자치법규) 제정 방안

○ 조례명: 가칭) ‘대전광역시 RISE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주요내용

-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지역대학의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RISE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설치 :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RISE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함/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센터의 조직과 인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함
- 센터의 기능

- | |
|---------------------------------------|
| 1. 대학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
| 2. 지역과 연계한 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
| 3. 지 · 산 · 학 · 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
| 4. 대학 관련 규제사항 발굴 및 혁신 지원 |
| 5. 대학 협력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등 |
| 6. 그 밖에 대학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관리 · 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 ·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
- 재정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관리 ·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지도 ·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관리 ·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련 서류 등을 검사 · 점검하게 할 수 있음

참고문헌

최준규 외(2019), 경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방안 연구, 경기연구원.